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반세기에 걸쳐 논쟁만 거듭했을 뿐 정작 도입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으나 이번에 시·도세로 설치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9년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획을 긋는 결과를 잉태할 수 있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독립세로 전환하였다. 소득에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독립시켰으며 나머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로 통·폐합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만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게 된다.

오히려 지방소득세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자치단체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지금의 지방세는 재산과제 비중이 49.5%에 달하여 기업유치로 인한 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로 연계되기 어려운 현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만 과표와 세율은 앞으로 3년간 지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 지방소득세의 구조

도입 전		도입 후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I p >>-ÁD ™ Ø'‰ Ý³
 ' 3 ÑÑ×:Áý y ÞÓ5t ñ1 ™@
 D ³:—•8 b[™ x >>-ÁD
 3 ÑÑ×:Áý v> l'á ...&lî Òþa
 >>-Á× Á D û(Â Ø°(> R «‡ Ñ
 Ñ×:Á (Q5ý û(Â— :û(ÂD d•z0
 3 á ð> Sî× Ñxl •Ý: ¯ ôî l
 À nÄ • × ¹@m™×:ÑyD &h(ù :°
 8 Ý³5ý û(Â :û(Â ÝÉ&
 :û(Â (>°-3 x ÞÈ :û(Â
 &h(À Ó < û S(p ÞŠ Sî
 ÑÑ×:Á (Q7 ÑÑ® Á ÑÑ®-d•®
 Ø a ™ò d — »}à ™ò8 [×î à•
 ; ' >d•À² ÑÑ×:Á3 (Qþv ÒE °
 "d•D w×> >ÖþÝ x™À • × d•°
 @ç — ÞÀ ÑÑ® Á× r'Á3 À
² ý Kþá Ñœl»î Òþa d•
 D ¯ð À Òvà W-ñS3 Ñ þÝ \$ÞÈ
 ÑÑ® ÁD è• ® /7 iD 3 ,
 Ñþ× àž ÑÑ®-d•® ØD è•® /7
 À² ý šñ '•þÓî Â® Á
 É& üaÀ× ™ ™ < Ø•l»5a ÑÑ
 d• Ñ 0 À² ™8 v> ĚbþÓî
 ™ q ™
 üa j ' 5ý Ø•; ÑÑd• ýÐ,—
 × lþà LòD '—À hQ⁻ ÑÑ® Á/
 i ,ÑÀ n2 ' >>-Á ÁQØ'
 Ð> ' a h ' l }< j5ý
 Ý ÞŠ Sî

ÑÉš•ÊyÝØ

ÑÑ×:Á (Q5ý ÑÉ@ Áû Ð 8 î
 á ~x5ý ¹@m™×:ÑyÀ x þ× >°—
 3 q ŽlÀ² 0a x þ× Ñ‰À

ÞÈ ÑÉš•ÊyÝØ8 ,—ÞÈ ™@
 á ...&lî
 ÑÉÊy\$ %× û(Â î• ä; À n2 :
 û(ÂD ;à Ěd8 Ñ þÝ \$ÞÈ ÑÑd•
 Ñ •(ÞžÑ‰D L 5ý ÑÉš•ÊyÝØ
 D ,—3 ~•þÓ5t ™ ÑÑ×:Á
 ì š îxK Ýþ8 ûiá û S(p û(Â
 À ĚØ:× ÑÑ×:Á ûQ ° R™
 ° šü 3 yĚÉ‡ d 8 'çþq ;î l
 ì MI ÑÉš•ÊyÝØ7 ÑÑÁK ÑÑ×:Á

차입금 규모(0.6조~1.6조 원) 정도로 조성하여 양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10년 5월 7일에 1차 조합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조합운영 관련 각종 규정의 제정, 조합장 선임, 기금운용계획, 배분금액 및 용도 지정 등을 의결하였다. 1차 조합회의 결과 배분금액은 상대적 손실규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120억 원, 부산광역시 136억 원, 대구광역시 337억 원, 인천광역시 92억 원, 광주광역시 308억 원, 대전광역시 265억 원, 울산광역시 272억 원, 경기도 111억 원, 강원도 182억 원, 충청북도 161억 원, 충청남도 136억 원, 전라북도 148억 원, 전라남도 232억 원, 경상북도 231억 원, 경상남도 178억 원으로 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에 준하여 기금의 3%인 90억 원을 배분한다.

지방재정 세입확충 효과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은 2조 1,391억 원 상당의 세입이 확충되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급증, 신성장동력 발굴과 같은 산업·경제적 기반확충이 시급한 어려움 속에서 이 정도의 재정지원은 큰 결심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만큼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규모 중에서 비수도권은 65.4%인 1조 3,98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물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충분치 못한 규모일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지금의 2배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효과

구분	지방 소비세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지역상생 발전기금	합계
서울	3,894	-21	389	120	3,604
경기	3,378	-303	43	111	3,143
경남	2,489	-531	42	178	2,094
부산	1,984	-130	169	136	1,821
대구	1,309	-108	90	337	1,448
경북	1,862	-775	39	231	1,279
충남	1,436	-410	39	136	1,123
대전	866	-53	67	265	1,011
충북	1,047	-334	44	161	830
전북	1,224	-526	36	148	810
광주	784	-81	65	308	946
인천	723	-55	99	92	661
울산	652	-36	52	272	836
강원	1,084	-491	38	182	737
전남	1,176	-698	33	232	677
제주	427	-131	15	90	371
합 계	24,335	-4,683	1,260	2,999	21,391
수도권	7,995 (32.8%)	-379	531	323	7,408 (34.6%)
비수도권	16,340 (67.2%)	-4,304	729	2,676	13,983 (65.4%)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ckh@krla.re.kr